미국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무인기 규제

정하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문접수 : 2015. 8. 7. 심사게시 : 2015. 8. 13. 게재확정 : 2015. 8. 23.

목 차

- 1. 들어가며
- 11. 무인기와 프라이버시 침해
- Ⅲ.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법리
 - 1. 물리적 침해(physical invasion)가 있는 경우
 - 2. 물리적 침해(physical invasion)가 없는 경우
- IV.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례
 - 1. Ciraolo v. California 판결
 - 2. Florida v. Riley 판결
 - 3. United States v. Kyllo 판결
- V. 미국에서의 무인기에 의한 사생활침해 예방법안
 - 1. 2013년 무인기 개인정보보호 및 공개법(안)
 - 2. 2013년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분석
 - 3. 2013년 부당한 원격감시로부터 자유보호법(안)
- VI. 맺으며

국문요약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제 곧 무인기(Drone)의 사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살게될 것이라고 예 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무인기가 처음에는 군사용도로 고안된 것이지만 최근에는 무인 택배. 농약 살포, 공기질 측정, 장난감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소형 무인기는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거의 무음으로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인기에 의한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는 기존의 비행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근접한 거리에서 피촬영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 이에 정밀한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가 가능하다. 또한 감시대상인 차량이나 건물에 직접 부착할 필요가 없이 공중을 비행하며 감시하는 것이므로 감시의 흔적 또한 남지 않는다는 특징 이 있다. 이러한 초근거리 정밀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에 의한 피촬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미국 대법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는 유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위반에 의한 증거능력배제의 법칙 (the exclusionary rule)을 확립하여 왔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서도 물리적 침해가 있는 경우와 물리적 침해가 있지 않는 경우로 구별하여 많은 연방대법원 판결례를 통하여 프라이버시 보호법리를 확립하여 왔고 이러한 판례법 원칙들을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의 경우에도 적용하여 일반 카메라가 아닌 고성능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United States v. Kyllo 판결이 있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법리들이 흔적도 남기지 않는 무인기에 의한 초근거리 정밀 항공감시(ae rial surveillance)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없는 단계에서 미국 의회의 상원과 하원에서는 2013년 무인기 개인정보보호 및 공개법(안)("the Drone Aircraft Privacy and Transparency Act of 2013"),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안)("Preserving American Privacy Act of 2013"). 2013년 부당한 원격감시로부터 자유보호법(안)(Preserving Freedom from Un warrented Surveillance Act of 2013) 등의 법률안들이 제출되어 미국 의회에 상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인기의 산업발전 잠재력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인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비에 관한 논의는 아직 많 지 않은 상황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혹은 사생활의 보호의 문제는 미국인만이 누리는 기본권이 라기 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하는 보편적 인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미국에서의 무인기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법안들은 우리나라에서의 관련법제의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고 본다.

주제어 : 무인기, 프라이버시, 항공관찰, 증거능력배제의 법칙, 개인정보

1. 들어가며

무인기((unmanned aerial vehicles 이하 'UAVs' 혹은 Drone)는 처음에는 군사용도로 고안 된 것이지만 최근에는 무인 택배. 농약 살포. 공기질 측정. 장난감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는 데 이것은 조정사의 탑승없이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행체로서 독립된 체계 또는 우주·지상체계들과 연동시켜 유영하는 비행체를 의미한다 1) 세계 무인기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53억 달러(6조1천700억원)에 달하며, 앞으로도 연 10% 이상의 고성장을 거듭해 2023년께 125억 달러(14조5천500억원)의 거대시장으로 발전함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미 래창조과학부도 2015년 7월 24일 "제19차 정보통신기술 정책해우소"를 개최하고 국내 무인기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도 최근 고부 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무인기 산업 육성에 나섰다.2) 산업통상자원부도 무인기산업이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항공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분야로 창조경제 산업엔진 13대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틸트로 무인항공기'를 포함하여 미래 항공기 개발사업을 적극 지 원할 것이라고 천명한 상태이다.3)

무인기(Drone)가 항공산업 발전의 블루오션이고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이 엄청난 산업분야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법적 분쟁 요소 또한 많은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소형으로 제작된 무인기(Drone)는 고성능 카메라 및 열감지 장치 등 센서를 부착할 수 있어서 이·착륙 및 운항 노선 주변의 기록들을 피촬영자의 동의없이 마음껏 촬영하고 전송 혹은 기록장치에 저장이 가능 하여 이에 의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무인카메라가 민간상용화된다면 무분별한 사용으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발생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의 예방이나 재난구조 활동과 같은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무인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발생도 예상된다. 4)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¹⁾ 유승우/박종혁, "민간 무인항공기 인증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항공진흥」 제59호, 2012, 46면 참조.

²⁾ 김인유 기자, 경기도의회도 '드론산업 육성 조례안' 제정 추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3/02000000000AKR201508 03072900061.HTML?input=1195m, 2015년 8월 6일 방문.

³⁾ 김선이,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미국 정책·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2 호, 2014, 136면 참조.

⁴⁾ 김선이, 앞의 논문, 136면 참조.

11. 무인기와 프라이버시 침해

무인기는 곳곳부분에서 교통법규위반 단속용 · 교통흐름 조사용 · 버스저용차선 위반단속용 · 쓰 레기무단투기 단속용 등으로 활용가능하다. 또한 범죄의 방지와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방범용과 수배차량 감지용, 산림청·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산불감시용 등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 능하다. 이렇게 공익목적으로 무인기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무인기는 근접한 거리에서 항공 감시(aerial surveillance)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 비행체에 의해서도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는 가능하다 기존의 비행체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탑승하여 조정하는 것이어서 지 상에서 상당한 거리를 둔 상곳에서 비행할 수 밖에 없고 그 비행체의 규모 또한 상당히 클 수 밖에 없어서 피촬영자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공중에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 우가 많고 인공위성 등에서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범위가 광범하여 특정인을 겨냥한다 고 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소형 무인기는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거의 무음 으로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인기에 의한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는 기존의 비행체에서 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근접한 거리에서 피촬영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밀한 항공감 시(aerial surveillance)가 가능하다. 또한 감시대상인 차량이나 건물에 직접 부착할 필요가 없이 공중을 비행하며 감시하는 것이므로 감시의 흔적 또한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공익목적으로 무인기가 운영되더라도 그것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에는 촬영목적 이상의 영상기록까지 남게 되 고. 피촬영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 대해서 촬영이 이루어지고 원하지 않는 자신에 관 한 영상을 국가기관 등 촬영기관이 보유하게 됨에 따라 불쾌감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무인기가 민간부분에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사무실 등의 내·외부에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고 조선소·건설현장에서 근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민간부분에서 무인기를 활용하여 고층과 저층 빌딩을 불문하고 건물 내부를 촬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무인기에 장착될 수 있는 소형 고성능 카메라 기능에 의해서 사생활의 침해가능성을 보다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한때 "몰래 카메라"라는 용어가 유행하여 촬영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기록이 녹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했다.5) 이제는 무인기에 장착된 소형 고속카메라에 의해 우

⁵⁾ 몰래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리의 일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하여 "몰래 무인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6)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의 성능 및 종류 그리고 작동방법에 따라 사생활 영역 내의 모습을 고 화질로 녹화 ·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개인의 초삿과 특정시간에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대상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녹화 · 지장된다는 것일 것이다. 무인기의 성능 이 발전되면 될수록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무인기의 상용 화에 따라 제기되는 사생활침해 문제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초상이나 행동을 정부에서 함부로 촬영하고 이를 임의로 관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자기정보결정권 등의 문제점들이라고 할 것이다. 7)

Ⅲ.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법리

사생활 영역 사생활 혹은 프라이버시는 시대·장소 및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상황 적 개념으로 다양한 화겻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다의적 개념이므로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미국의 연방헌법에는 우리나라 헌법상 사생활보호 규정8과 같은 프라이버 시보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9) 연방수정헌법의 여러 규정들에 근거해서 프라이버시의 구 체적 범위가 설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발달에 따른 프라이버시보호의 문제는 연방 수정헌법 제4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방수정헌법 제4조에서 부당한 수색과 압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신체. 거주지. 문서. 혹은 점유물에 관하 안전권은 정부의 부당하 수색이나 압수에 의해서 침해되어서는 안되고 ..." 10)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조항과 관련해서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 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⁶⁾ 김선이,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미국 정책·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2 호. 2014, 140면 참조.

⁷⁾ 김선이, 앞의 논문, 139면 참조.

⁸⁾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⁹⁾ 졸고, "미국 연방법원의 위치정보(locational information)관련 최근 판결례 분석", 「IT와 법연구 제7집」, 2013, 235면 참조,

¹⁰⁾ The U.S. Constitution 4th Amendments: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

법원의 사전 영장이나 명령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도·감청에 의하여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특히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불법수색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 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위반에 의한 증거능력배제의 원칙(the exclusionary rule)¹¹⁾이 적용되는가가 문제된다. 미국에서는 기술 그 중에서도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어떤 장치의 용의자의 공간에 대한 물리적 침해(physical invasion)가 있는 경우와 물리적 침해(physical invasion)가 없었던 경우를 나누어서 프라이버시 보호의 법리가 다르게 발달했다는 특징이 있다.

1. 물리적 침해(physical invasion)가 있는 경우

가. 1928년 Olmstead v. U.S. 판결¹²⁾

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유선전화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 이후에 전화선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통화의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범죄용의자를 체포한 경우에 이러한 유선 전화선에 대한 도청행위가 통화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1928년 Olmstead v. U.S. 판결¹³⁾에서 연방대법원은 다루었다. ¹⁴⁾ 이 사건의 발단은 금주법이 시행되고 있던 시기에 밀주업자의 사무실에서 거주지로 이어져있는 유선 전화선에 법원의 사전영장없이 수사당국에서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통화내용을 도청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용의자인 Olmstead가 불법적으로 주류의 소자판매를 모의했다는 것을 근거로 그를 기소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밀주업자 Olmstead의 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권리는 도청장치의 설치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부당한 수색은 "신체, 거주지, 문서, 혹은 점유물과 같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외부에 노출된 전화선에 도청장치를설치한 것으로 거주지(houses)에 대한 물리적 침해("physical invasion") 혹은 인식가능한 물리적 효과("tangible material effects")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침해가

¹¹⁾ 미국 재판에서 불법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Boyd v. United States(116 U.S. 616 (1886)) 판결로부터 인정되어 온 원칙이다. Meredith N. Garagiola, When the Constable Behaves and the Courts Blunder: Expanding The Good—Faith Exception in Wake of Arizona v. Gant, 47 Am, Crim. L. Rev. 1285, 1293 (2010).

^{12) 277} U.S. 438 (1928).

^{13) 277} U.S. 438 (1928).

¹⁴⁾ 졸고,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보호", 「공법학연구」제14권 제2호, 2013, 68면 이하.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15)

연방대법원은 연방수정헌법 제4조를 오직 재산권에 근거한 부당한 수색·압수(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의 개념설정에 근거하여 설정한 것이다. 16) 이러한 재산권에 근거한 프라이 버시 보호에 대하여 Brandeis 대법관은 그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부당하 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어떤 수단을 사용하였든지 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위반으로 보아야한다."라는 반대견해를 피력하였다. 17)

나. Goldman v. U.S. 판결18)

연방대법원의 Olmstead판결이 있은 지 14년 후에 좀 더 정교한 도청장치를 이용한 도청행위 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련된 Goldman v. U.S. 판결¹⁹⁾이 있었다. 연방당국에서는 피 의자가 사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후에 피의자의 사무실에 인접한 사무실에서 Detectaphone²⁰⁾을 이용하여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한 전화통화내용을 청취하여 증거를 수집하 였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에 근거하여 피의자는 재판에서 사기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의 피의자는 사전영장이 없는 Detectaphone에 의한 증거수집은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의한 불 법수집증거로 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을 구성하고 있 는 사실들이 Olmstead판결에서 인정되었던 사실들과 법적으로 유사하다고 하면서 연방공무원이 피의자의 사무실을 본인의 허락없이 물리적으로 무단침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 해는 없었다고 판결하였다.21) 이 연방대법원 판결 역시 재산권에 기초한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에 기초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22)

다. Silverman v. U.S. 판결²³⁾

¹⁵⁾ Ibid. 466, "the Fourth Amendment shows that the search is to be of material things-the person, the house, his papers, or his effects

¹⁶⁾ 졸고, "미국 연방법원의 위치정보(locational information)관련 최근 판결례 분석", IT와 법연구 제7집(2013) 236면 참조.

¹⁷⁾ Ibid. 478. "every unjustifiable intrusion by the Government upon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 whatever the means employed, must be deemed a violation of the Fourth Amendment."

^{18) 316} U.S. 129 (1942).

^{19) 316} U.S. 129 (1942).

²⁰⁾ Detectaphone은 한쪽 벽에 걸어두면 다른 방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고성능 확성기를 말한다. Ibid. 131.

^{21) 316} U.S. 129, 134 (1942).

²²⁾ Danial T. Pesciotta, I'm Not Dead Yet: Katz, Jones, And The Fourth Amendment In the 21st Century, 63 Case. W. Res. L. Rev. 187, 195 (2012).

연방대법원은 Silverman v. U.S. 판결²⁴)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다루었던 것은 마이크에 1 피트 정도의 금속봉(spike)을 달아서 피의자의 건물 안쪽으로 집어넣어 건물 내에서의 대화내용을 법집행요원이 도청한 문제이다. 연방대법원은 금속봉(spike)이 피고인의 집을 물리적으로 무단 침입했기 때문에 Goldman 사건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위반이 일어났다고 판결하였다. ²⁵)

이러한 사건들에서 정부의 감시활동이 피고인의 집이나 사무실 등과 같은 사적공간을 침해하면 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위반이 되는 반면에 정부의 감시활동이 피고인의 사적 공간을 침해하지 않고 공적 공간에서는 정부가 어떠한 감시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위반이아니라고 연방대법원은 판결하는 경향을 보였다.²⁶⁾

라. 2012년에 U.S v. Jones 판결²⁷⁾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2년에 U.S v. Jones 판결²⁸⁾에서 경찰이 위치추적장치(GPS)를 영장의 허용범위를 벗어나서 용의자의 차량에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미국연방수정헌법 제 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수색("Unreasonable Search")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2004년 경찰전담반은 미국 콜롬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에서 거주하던 Antoine J ones가 마약류를 거래한 혐의점을 발견하고 통상적 수사방법에 의한 수사를 거친 이후에 연방제1심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용의자가 운행하던 차량에 위치추적전자장치(GPS electron ic tracking device)를 부착하였다. 문제는 연방판사가 발부한 영장에는 위치추적전자장치를 10일 이내에 콜롬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에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하루 지난 후에 메릴랜드주(the State of Maryland)에서 용의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건이다. 경찰은 그 후 이 장치를 이용하여 용의자의 차량을 28일 동안 추적했고 같은 주에 있는 마약관련물품 은닉처를 발견하게 된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들을 근거로 해서

^{23) 365} U.S. 505 (1961).

^{24) 365} U.S. 505 (1961).

²⁵⁾ Ibid. 510-12.

²⁶⁾ Shaun B. Spencer, GPS Monitoring Device Leads the Supreme Court to a Crossroads in Privacy Law, 46 N.E. L. Rev. 45, 47 (2012).

^{27) 132} S. Ct. 945 (2012).

^{28) 132} S. Ct. 945 (2012).

2005년 10월에 Jones를 체포하고 현금과 코카인을 은닉처에서 압수하게 된다. 연방정부당국은 Jones를 특정물질의 소지 및 배포 혐의로 기소하였다. 29)

Jones는 위치추적장치(GPS)에 의해 불법 수집된 위치정보에 근거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불 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exclusionary rule)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연방제1심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배척하였는데 배심원들은 불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을 근거로 하여 Jones가 유죄라고 판결하였다.³⁰⁾

연방제1심법원에서 판결의 근거로 한 것은 1983년에 있었던 United States v. Knotts 판 결³¹⁾이었다. Knotts 판결에서는 차량이 공공도로에서 운행하는 동안에는 운전자 등은 자신의 이동경로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무선호출기(beeper)를 사용하여 위치추적을 하더라도 강제수색(search)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로 Johns의 차량이 공공도로에 우행하던 중에 위치추적장치(GPS)에 의 해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Jones의 차량이 차고에 주차되 어 있었던 동안에 수집된 증거는 불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연방대법원의 United States v. Karo판결³²⁾에 근거한 것이다. 연방제1심법원의 판결은 무선호출기(Beeper)에 의한 이동경로추적과 위치추적장치(GPS)에 의한 위치추적을 거의 동일한 현상으로 보고 무선호출기(Beeper)에 의한 이동경로추적에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선결례를 위치 추적장치(GPS)에 의한 위치추적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Jones에 대한 연방제1심법원의 유죄판결은 연방제2심법원에서 파기되었다. Jones의 이동경로 를 하루 24시간 계속하여 4주 동안 지속적으로 위치추적장치(GPS)로 감시하는 것은 부당한 강 제수색(Unreasonable search)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33) 연방제2심법원은 연방대법원의 Katz v. U.S.판결³⁴⁾을 적용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제2심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그 논 거를 달리했다. Scalia 대법관³⁵⁾은 정부가 목표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하여 그 차량 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 그 장치를 이용한 것은 강제수색(search)에 해당한다고 하였

²⁹⁾ Jones는 미국 연방법률 21 U.S.C. § 841-§ 846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

³⁰⁾ U.S. v. Maynard, 615 F.3d 544, 549 (D.C. Cir. 2010) 참조.

^{31) 460} U.S. 276 (1983).

^{32) 468} U.S. 705 (1984).

³³⁾ U.S. v. Maynard, 615 F.3d 544, 555 (D.C. Cir. 2010) 참조.

^{34) 389} U.S. 347 (1967).

³⁵⁾ 이 견해에 연방대법원장 Roberts, 연방대법관 Kennedy, 연방대법관 Thomas, 연방대법관 Sotomayor 등이 찬동하여 다수견해가 되었다.

다. 36) Scalia 대법관이 다수의 견해를 피력했고 여기에 많은 대법관이 동조하였다. Scalia 대법관의 견해는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에 근거한 연방제2심법원의 논거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연방제1심법원의 논거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다. Scalia 대법관은 18세기 영국의 불법행위법의 무단침입(trespass)에 근거한 것이었다. 연방수정헌법 제4조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근거규정이고 또한 재산권(property)을 보호하는 근거규정이 된다고 하면서 Jones 소유의 차량이 연방수정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effects" 37)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Jones 점유물인 차량에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한 것 자체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에 대한 물리적 침해에 해당하고 이 장치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강제수사(search)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38)

Scalia 대법관은 프라이버시보호의 근거가 되는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는 어떠한 감시활동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야 하지만 무단침입의 경우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³⁹⁾

Sotomayor 대법관은 정부가 정보수집을 위해서 개인재산을 물리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강제수사가 된다는 Scalia 대법관의 견해에 찬성하면서도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감시활동이 물리적 침해(physical intrusion)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다수견해는 미래에 다른 사건이 발생할 경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별개의견을 제시했다.40) Sotomayor 대법관은 위치추적장치(GPS)에 의한 장기간 감시활동은 프라이버시의 기대(expectations of privacy)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장치를 이용한 단기간의 감시활동에 특별한 주의가필요하다고 하였다.41)

Jones 관련 사건은 위치추적전자장치(GPS electronic tracking device)를 이용하여 마약거 래용의자가 승차한 차량의 이동경로를 28일간 추적한 것이 관련 미국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관한 판결로 연방제1심법원과 연방제2심법원은 정보통신기기와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선례에 근거하여 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적용범위를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의 다수견해는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의 문제를 18세기 영국 불법행위법에서 인정되었던 무단침입

³⁶⁾ Jones, 132 S.Ct. 949 (2012).

³⁷⁾ 여기서 effects는 물품, 동산, 소유물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³⁸⁾ Jones, 132 S.Ct. 949 (2012).

³⁹⁾ Jones, 132 S.Ct. 954 (2012).

⁴⁰⁾ Jones, 132 S.Ct. 955 (2012).

⁴¹⁾ Jones, 132 S.Ct. 955-56 (2012).

(trespass)론을 적용하여 위치추적장치가 용의차량에 불법적으로 물리적 침해를 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결하였다. 연방대법원의 Jones 판결은 물리적 침해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전파의 추적에 의한 위치정보의 수집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어떻게 판단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42)

2. 물리적 침해(physical invasion)가 없는 경우

가. Katz v. U.S.판결

공중전화부스에서의 통화내용에 대한 프라이버시보호 문제에 관한 것이 연방대법원의 Katz v. U.S.판결⁴³⁾이다. 이 판결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폐쇄형 공중전화박스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통화자는 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특정인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주관적으로 실제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와 그러한 기대가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의해서 특정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영역을 확정하게 된다. ⁴⁴⁾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영역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reaso nable expectation of privacy)'에 의하여 설정된다. ⁴⁵⁾ 연방수정헌법 제4조와 관련한 Katz v. U.S.판결⁴⁶⁾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란 명백히 표현되어진 판단기준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이 결정된다. 첫째 개인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실제적 주관적 기대를 나타내야 한다. 둘째는 그러한 기대를 사회가 합리적('reasonable')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⁴⁷⁾

이러한 Katz판결의 심사기준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조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응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많은 판결에서 인용되었

⁴²⁾ Zachary Gray, Herding Katz: GPS Tracking and Society's Expectation of Privacy In the 21st Century, 40 Hastings Const. L. Q. 145, 147 (2012).

^{43) 389} U.S. 347 (1967).

⁴⁴⁾ Ibid. 361. First, the individual must exhibit a subjective expectation of privacy. Second, the expectation must be "one that society is prepared to recognize as "reasonable."

⁴⁵⁾ Lindsay Noyce, Private Ordering of Employee Privacy: Protecting Employees' Expectations of Privacy With Implied-In-Fact Contract Right, 1 Am. U. Labor & Emp. L.F. 27, 30 (2011).

^{46) 389} U.S. 347 (1967).

⁴⁷⁾ Zachary Gray, Herding Katz: GPS Tracking and Society's Expectation of Privacy In the 21st Century, 40 Hastings Const. L. Q. 145, 145 (2012).

다 48)

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은 사생활보호를 위한 개인 스스로의 합리적 노력과 객관적 사회적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주장하는 주체가 스스로 그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행동했다면 그러한 행동에 대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즉 자신의 목욕탕창문을 거실창문처럼 크게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나체를 보지 않기를 기대하는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합리적인 기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목욕탕창문을 작고 불투명한 유리로 만들었다면 자신의 나신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대는 합리적인 것이며 이에 따라 고성능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이 나체사진을 도찰하였다면 이것은 타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49)

연방대법원은 Katz 판결 이후 이와 관련된 수많은 판결들을 하였지만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일관되지 않고 이상한 결과(a series of inconsistent and bizarre results)를 가져왔다. 50) 따라서 많은 법학자들이나 변호사들은 물론 하급법원들에도 관련 사례에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지만51)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범위가 주어진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나. 1983년 United States v. Knotts 판결⁵²⁾

연방대법원은 1983년 United States v. Knotts 판결⁵³⁾을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Knotts 판결에서 차량이 개인 차고에 주차되어 있었는지 혹은 공공도로에서 운행되고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어떤 사람이 공공도로에서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육안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특정인의 이동경로를 관찰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가 없다고

⁴⁸⁾ United States v. Thomas, 729 F.2d 120, 122-23 (2d Cir. 1984).

⁴⁹⁾ 박인수박문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2집」, 2008/11, 641면 참조.

⁵⁰⁾ Silas J. Wasserstrom, Louis Michael Seiderman, The Fourth Amendment as Constitutional Theory, 77 Geo. L. J. 19, 29 (1988).

⁵¹⁾ 졸고, "미국 연방법원의 위치정보(locational information)관련 최근 판결례 분석", 「IT와 법연구」

제7집, 2013, 239면 참조.

^{52) 460} U.S. 276 (1983).

^{53) 460} U.S. 276 (1983).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을 무선호출기(beeper)를 사용하여 공공도로상 이동경로를 위치추적을 하더라도 이것은 공적 공간에서의 일이므로 강제수색(search)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법원의 수색영장을 발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54)

IV.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련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결정례

미국의 연방헌법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연방수정헌법의 여러 규정들에 근거해서 프라이버시의 구체적 범위가 설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영역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에 의하여 설정된다. 연방수정헌법 제4조55)와 관련한 Katz v. U.S.판결56)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합리적 기대가능성이란 명백히 표현되어진 판단기준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이 결정된다.이 판결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폐쇄형 공중전화박스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통화자는 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프라이버시에 대한합리적 기대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특정인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주관적으로 실제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와 그러한 기대가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의해서 특정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영역을 확정하게 된다.57)

이러한 Katz판결의 심사기준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조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응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 후 많은 판결에서 인용하게 되었다. 58)

⁵⁴⁾ Matthew Radler, Privacy Is the Problem: United States v. Maynard and a Case for a New Regulatory Model for Police Surveillance, 80 Geo. Wash. L. Rev. 1209, 1228 (2012).

⁵⁵⁾ U.S. Const. amend, IV.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56) 389} U.S. 347 (1967).

⁵⁷⁾ Ibid. 361. First, the individual must exhibit a subjective expectation of privacy. Ibid. Second, the expectation must be "one that society is prepared to recognize as 'reasonable.'

⁵⁸⁾ United States v. Thomas, 729 F.2d 120, 122-23 (2d Cir. 1984).

1. Ciraolo v. California 판결59)

이 사건은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와 관련된 최초의 연방대법원 판결 중의 하나이다. 1984년 캘리포니아에서 경찰이 Ciraolo의 거주지에서 약 300 미터 상공을 수색영장 없이 비행하면서 Ciraolo가 자신의 뒷마당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경찰은 이러한 사진들에 근거하여 Ciraolo의 거주지에 대한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대마를 압수하였다. 이렇게 압수된 대마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Ciraolo의 주장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는 연방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60) Katz판결의 기준을 적용하여 "Ciraolo가 자신의 뒷마당이 이러한 항공감시로부터 보호될 것이라는 기대는 합리적이지 않고 이러한 기대를 사회가 존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61)라고 판시하였다.

2. Florida v. Riley 판결62)

이 사건은 적법한 영장없는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와 관련된 것이다. Riley는 이동식거주지에 살면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온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온실의 덮개가떨어져나가 있었고, 온실 주위에는 관목 숲과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Riley는 '출입금지'라는 표식을 자신의 온실 주변에 부착하였다. 경찰관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Riley가 온실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Riley의 온실을 수색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헬기를 이용하여 Riley의 거주지 상공을 120 미터에서 비행하면서 Riley의 온실에서 대마를 발견하였다. 대법원은 Riley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문제의 헬기를 이용한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는 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search)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63)

⁵⁹⁾ Ciraolo v. California, 476 U.S. 207, 213 (1986).

⁶⁰⁾ Ibid 213.

⁶¹⁾ Ibid 214. "respondent's expectation that his garden was protected from such observation is unreasonable and is not an expectation that society is prepared to honor."

⁶²⁾ Florida v. Riley, 488 U.S. 445, 448 (1989).

⁶³⁾ Ibid 450.

3. United States v. Kyllo 판결⁶⁴⁾

이 사건은 적법한 영장없이 열화상장비(thermal imaging device)를 이용하여 Kyllo의 대마제조혐의를 입증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을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에 관련한 사건들과는 다르게 취급하였다. 항공기는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열화상장비(thermal imaging device)는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논거였다. 연방대법원은 영장없이 열화상장비(thermal imaging device)를 이용하는 것은 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search)에 해당하고 이것은 Kyllo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침해하는 것이된다고 판결하였다.65)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와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판결례들을 살펴보면 무인기(drone)와 관련된 연방법원의 결정들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인기를 이용한 감시가 연방수정 헌법 제4조의 수색(search)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무인기(drone)가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인가' (available to the public)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무인기(drone)의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그 사용이 확대되어 대중화된다면 무인기 감시(drone surveillance)는 연방수정헌법 제4조 위반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될 것이다. 어느 누구나 무인기(drone)를 구입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들을 용이하게 감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인기에 의한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연방법원의 프라이버시 보호 법리에 의해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인기에 의한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의자의 재산에 대한 물리적 침해(physical invasion) 없이 공중에서 고성능의 카메라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만일 무인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가능성마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미국연방의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방안이 연방법률에 의해 무인기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줄여보자는 시도라고 할 것이다.

⁶⁴⁾ United States v. Kyllo, 533 U.S. 27 (2001).

⁶⁵⁾ Ibid 34

⁶⁶⁾ Veronica E, McKnight, Drone Technology and the Fourth Amendment: Aerial Surveillance Precedent and Kyllo do not account for current technology and privacy concerns, 51 Cal, W. L. Rev. 263, 283 (2015).

V. 미국에서의 무인기에 의한 사생활침해 예방법안

1. 2013년 무인기 개인정보보호 및 공개법(안)

본 법안은 미국 상원의원인 에드워드 존 마키(Edward John Markey)가 제안한 것으로 최종 적으로 입법화되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 3년 무인기 개인정보보호 및 공개법(악)("the Drone Aircraft Privacy and Transparency Act of 2013")은 미국 상원에 상정된 법안으로 군사용 무인기와 민간무인기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상당히 광범위한 무인기에 대한 입법으로 1. Short title(법명). 2 Findings (입법이유), 3. Guidance and limitations regarding unmanned aircraft systems(무인기 시 스템에 대한 지침과 제한사항). 4. Enforcement(집행). 5. Model aircraft provision(모델 항 공기 규정)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이 있는 규정은 제 339조라고 할 수 있다. 제339조 (a)에서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고 (b) Data collection statem ent에서는 무인기 운영 신청자들은 개인정보보호의 워칙에 따라 무인기운영관련 개인정보를 수 집해야한다는 요건을 명확히 밝힌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제339조 (c) Data minimization stat ement에서는 개인정보수집의 최소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무인기 운영 허가와 관련이 없는 범죄수사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화하는 것과 무인기로 수집된 개인정 보는 범죄수사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폐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폐기하는 방안에 관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다음 표에서와 같 다. 67)

≪입법안의 주요 목차≫

- 1. Short title
- 2. Findings
- 3. Guidance and limitations regarding unmanned aircraft systems
 - 337. Privacy study and report
 - 338. Rulemaking
 - 339. Data collection statement and data minimization statements

⁶⁷⁾ 김선이,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미국 정책·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2 호, 2014, 144-5면 참조.

- (a) In general
- (b) Data collection statement
- (c) Data minimization statement
- 340. Disclosure of approved certificates, licenses, and other grants of authority
- (a) In general
- (b) Deadline
- 341. Warrants required for generalized surveillance
- (a) In general
- (b) Exceptional
- 4. Enforcement
 - (a) Prohibited conduct
 - (b) Enforcement by Federal Trade Commission
 - (c) Actions by States
 - (d) Private right of action
 - (e) Suits against governmental entites
 - (f) License revocation
 - (g) Violation
 - (h) Definitions
- 5. Model aircraft provision

2. 2013년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분석

본 법안은 공화당 하원의원인 테드 포(Ted Poe)가 제안한 법률안이지만 결국 입법화에 되는 것에는 실패했다. 2013년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안)("Preserving American Privacy Act of 20 13")은 3119a. Definitions(정의조항), 3119b. Use of public unmanned aircraft systems (공적 무인기의 사용), 3119c, Use of covered information as evidence(수집정보의 증거 사 용), 3119d, Administrative discipline(행정벌칙), 3119e, Reporting(보고), 3119g, Applica tion with other Federal laws(다른 연방법의 적용), 3119h. Ban on weaponization(무기화 금지). 3119i. Rule of construction regarding State laws on unmanned aircraft system usage(무인기의 사용에 관한 주법과 관련된 해석 규정)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68)

⁶⁸⁾ 김선이,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미국 정책·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2 호, 2014, 147-8면 참조.

≪입법안의 주요 목차≫

- 3119a. Definitions
- 3119b. Use of public unmanned aircraft systems
- 3119c. Use of covered information as evidence
- 3119d. Administrative discipline
- 3119e. Reporting
- 3119g. Application with other Federal laws.
- 3119h. Ban on weaponization
- 3119i. Rule of construction regarding State laws on unmanned aircraft system usage

이 법안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이 있는 규정은 3119c. Use of covered inform ation as evidence(수집정보의 증거 사용)이다. 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률에 의해서 수집정보(covered information)이란 개인색별가능정보(information that is reasonably likely to enable identification of an individual),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개인재산관련정보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s property that is not in plain view)라고 규정하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Warrant), 명령(Order), 25 마일(mile) 이내의 미국 국경 지대(U.S. Land Border), 동의(Consent), 응급상황(Emergency) 등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 청문회(hearing), 다른 절차 등에서 개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법안의 특징은 무인항공기에 의한 공중감시로 수집된 정보가 이 법안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명령, 국경지대, 피촬영자의 동의,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무인기에 의한 공중감시가 적법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3. 2013년 부당한 원격감시로부터 자유보호법(안)

본 법안은 하원의원 스콧(Austin Scott)이 제안한 법률(안)으로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2013년 부당한 원격감시로부터 자유보호법(안)(Preserving Freedom from Unwarrented Surveillance Act of 2013)의 구체적 내용은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ection 1. Short Title(법률명), Section 2. Definition(정의조항), Section 3. Prohibited Use of Drones(무인기의 금지된 사용), 4. Exceptions(예외조항), Section 5. Remedies For Violation(위반사항

에 대한 법적 구제), Section 6. Prohibition on Use of Evidence(증거사용의 금지) 등의 조 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69)

≪입법안의 주요 목차≫

Section 1. Short Title.

Section 2. Definition

Section 3. Prohibited Use of Drones

Section 4 Exceptions

Section 5. Remedies For Violation

Section 6. Prohibition on Use of Evidence

이 법률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무인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예외조항(Sec. 4)에서 (1) 국경순찰(Patrol of Borders), (2) 위급상황(Exigent Circumstances), (3) 고도위험(High Risk)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무인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프라이버시 보호 와 관련이 있는 조항은 Section 6. Prohibition on Use of Evidence(증거사용의 금지)이다. 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을 위반하고 수집된 어떤 증거도 미국 법원의 형벌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VI. 맺으며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제 곧 무인기(Drone)의 사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살게될 것이라고 예 상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무인기가 처음에는 군사용도로 고안된 것이 지만 최근에는 무인 택배, 농약 살포, 공기질 측정, 장난감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미국 전 자거래사이트인 이베이(ebay.com)나 아마존(amazon.com)에 접속해보면 단돈 40달러짜리 장난 감 무인기에서부터 수만불의 무인기까지 다양한 무인기들을 검색할 수 있고 구입이 가능하다. 무인기로 인한 사고 또한 많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문제는 무인기는 초근 거리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형 무인기는 크기가 작을 뿐만 아

⁶⁹⁾ H.R. 972, 113th Cong. (2013), https://www.congress.gov/bill/113th-congress/senate-bill/1016. 2015년 8월 5일 방문.

니라 거의 무음으로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인기에 의한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는 기존의 비행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근접한 거리에서 피촬영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밀한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가 가능하다. 또한 감시대상인 차량이나 건물에 직접 부착할 필요가 없이 공중을 비행하며 감시하는 것이므로 감시의 흔적 또한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초근거리 정밀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는 피촬영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촬영자의 동의없이 언제든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이에 의한 피촬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미국 대법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연방수정헌법 제4조의 위반에 의한증거능력배제의 원칙(the exclusionary rule) 70)을 확립하여 왔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서도 물리적 침해가 있는 경우와 물리적 침해가 있지 않는 경우로 구별하여 많은 연방대법원 판결제들을 확립하여 왔고 이러한 판례법 원칙들을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의 경우에도 적용하여 일반 카메라가 아닌 고성능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항공감시(aerial surveillance)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United States v. Kyllo 판결71)에서 부정하였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법리들이 흔적도 남기지 않는 무인기에 의한 초근거리 정밀 항공감시(ae rial surveillance)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없는 단계에서 미국 의회의 상원과 하원에서는 2013년 무인기 개인정보보호 및 공개법(안)("the Drone Aircraft Privacy and Transparency Act of 2013"), 미국 개인정보보호법(안)("Preserving American Privacy Act of 2013"), 2013년 부당한 원격감시로부터 자유보호법(안)(Preserving Freedom from Un warrented Surveillance Act of 2013) 등의 법률안들이 만들어져서 미국 의회에 상장되었지만 아직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인기의 산업발전 잠재력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 어지고 있지만 무인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비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혹은 사생활의 보호의 문제는 미국인만이 누리는 기본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하는 보편적 인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에서의 무인기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법안들은 우리나라에서의 관련법제의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고 본다.

⁷⁰⁾ Meredith N. Garagiola, When the Constable Behaves and the Courts Blunder: Expanding The Good-Faith Exception in Wake of Arizona v. Gant, 47 Am. Crim. L. Rev. 1285, 1293 (2010).

⁷¹⁾ United States v. Kyllo, 533 U.S. 27 (2001).

참고문헌

- 김선이,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미국 정책·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2호, 2014
- 박인수·박문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2 집」, 2008/11
- 유승우/박종혁, "민간 무인항공기 인증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항공진흥」 제59호, 2012
- 정하명, "미국 연방법원의 위치정보(locational information)관련 최근 판결례 분석",「IT 와 법연구」제7집, 2013
- 정하명.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보호". 「공법학연구」제14권 제2호. 2013
- O Danial T. Pesciotta, I'm Not Dead Yet: Katz, Jones, And The Fourth Amendment In the 21st Century, 63 Case. W. Res. L. Rev. 187 (2012)
- Lindsay Noyce, Private Ordering of Employee Privacy: Protecting Employees'
 Expectations of Privacy With Implied-In-Fact Contract Right, 1 Am. U. Labor &
 Emp. L.F. 27 (2011)
- Matthew Radler, Privacy Is the Problem: United States v. Maynard and a Case for a New Regulatory Model for Police Surveillance, 80 Geo. Wash. L. Rev. 1209 (2012)
- Meredith N. Garagiola, When the Constable Behaves and the Courts Blunder: Expanding The Good-Faith Exception in Wake of Arizona v. Gant, 47 Am. Crim. L. Rev. 1285 (2010)
- O Silas J. Wasserstrom, Louis Michael Seiderman, The Fourth Amendment as Constitutional Theory, 77 Geo. L. J. 19 (1988)
- O Veronica E. McKnight, Drone Technology and the Fourth Amendment: Aerial Surveillance Precedent and Kyllo do not account for current technology and privacy concerns, 51 Cal. W. L. Rev. 263 (2015)

O Zachary Gray, Herding Katz: GPS Tracking and Society's Expectation of Privacy In the 21st Century, 40 Hastings Const. L. Q. 145 (2012) 등 다수 미국 연방법원 판례 참조.

Abstract

Many futurists expect that we are now living in an era that would soon become the routine use of UAV(Drone). There are some possibilities of aerial surveillance by UAV. Small UAV with mini sophisticated camera is able to take pictures and monitor in a close proximity even when to-be-photographed person is not recognized. There is no need to attach directly to a target vehicle or building and also leaves no trail of surveillance in aerial surveillance by Drone.

The US Supreme Court long ago recognized the exclusionary rule based on the U.S. Cons. 4th Amendment. In United States v. Kyllo decision, 533 U.S. 27 (2001).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aerial surveillance with high-performance thermal camera was against the privacy protection. As the use of UAV is increased, there is some need to have proper legislation to protect privacy against the small Drone's aerial surveillance.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S Congress introduced the Drone Aircraft Privacy and Transparency Act of 2013, Preserving Freedom from Unwarrented Surveillance Act of 2013, and Preserving American Privacy Act of 2013 to protect privacy from aerial surveillance by UVA, all of them failed to pass the Congress.

In Korea, there are many discussions on industrial development potential of UAV, but only several scholars argues that there is the possibility of invasion of privacy regarding to pervasive use of UAV. American Bills regarding to protection of individual privacy against closed aerial by UAV would provide man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levant legislation in the country.

Keywords: UAV, Privacy, aerial surveillance, the exclusionary rule, Individual Information